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탁 희 성\*

### 국 | 문 | 요 | 약

저작물의 이용행태 및 기술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침해율 줄이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법적규제강화에 무게를 더 실어줌으로써 오히려 음성적인 침해가 더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등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에 대한 예비적·보조적인 보호가 아니라 추가적·본질적 보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인 통제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인 보호에만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예외와 제한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저작물 또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권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의 기회가 증가하고 콘텐츠의 이용이 확대되면서도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한도내에서만 그러한 보호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공정이용,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1. 문제제기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기인하는 디지털 저작물은 저작권의 전체적인 체계 자체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이 네트워크와 결합함으로써 저작물이 용이하게 복제·배포·공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경로가 확장되어 판매 및 이용기회가 증대되어 저작물의 활발한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의 역기능을 유발함으로써 저작권침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저작물의 디지털화는 무단복제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짧은 시간에 대량복사 및 생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며, 네트워크화는 복제된 저작물을 불법유통시키는데 이용됨으로써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획득의 용이성은 결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울타리를 보다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환경의 변화는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즉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행태 및 기술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침해율 줄이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규제강화에 무게를 더 실어줌으로써 오히려 음성적인 침해를 더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저작물에 적용시키고 있다.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술에 있다’<sup>1)</sup>고 하는 지적과 같이, 저작권자들은 기술이 야기하고 있는 저작권의 보호와 권리구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국 기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구수단으로서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불법유통을 차단하면서도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단의 일환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용하게 된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 및 접근을 통제하고 권리관리정보에 의해 권리처리와 위법한 이용 발견 및 입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

1) Charles Clark, “Publishers and Publishing in the Digital Era”, WIPO, Mexico Symposium Book, 1995, p.346.

저작권보호 매카니즘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진화발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적용된 보호기술 역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 역시 이를 회피 내지 무력화 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밖에 없어서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난제로 남게 된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자체를 불법화시킴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이 반드시 필연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제한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고, 저작물에 적용된 보호기술조치가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sup>2)</sup>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권리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까지도 보호의 범위로 포섭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갖는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위험성

### 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의 필요성

저작권자들이 법이 부여하는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통하여 스스로 권리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 법적 구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있다. 즉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의 침해는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법적인 구제는 대부분 사후적 배상과 행위자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미 저작권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

2) 장재원, DRM 기술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한계와 규제,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논문, 2005, 39면.

를 입은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그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각지로 저작물을 보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은 국가단위로 효력이 제한되어 있고, 그 보호의 방법과 수준도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수준이나 실질적인 집행의 효율성과 무관하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sup>3)</sup>

## 나.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의 위험성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술조치의 효과는 법과는 관계없이 이를 적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또는 그 의도에 관계없이 저작권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sup>4)</sup>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기본적인 속성상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불법복제나 유통을 막기 위한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일정한 경우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되어 저작물이 사실상 공유의 영역으로 넘어온 경우에 있어서 조차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거나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등 - 보호기간과 무관하게 거의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경우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영역의 저작물임에도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저작권보호기간을 설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술적 보

3) 임원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3, 36-38면 참조.

4) Pamela Samuelson, “DRM(and, or, vs.) the Law”, 46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6, No.4, 2003, p. 42.

호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코드가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사적인 통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스스로 보호범위를 설정을 하지 않는 한 법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보다 강력한 보호만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가. 주요 외국의 입법동향

##### 1) 미국의 DMCA(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미국의 밀레니엄디지털저작권법은 연방저작권법에 수용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연방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권보호시스템의 우회’라는 표제하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조치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의 보호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1201(a)(1)은 저작권자에 의해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들을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201(a)(2),(b)는 기술적 보호조치들을 우회할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생산된 기술 및 장치들의 제조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물への 접근통제의 회피가 금지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권리 즉 ‘접근권’이 결국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sup>5)</sup> 이와 같은 저작물への 접근은 본래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통제 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제1204(a)조에 의하여 초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재범인 경우에는 10년

---

5) 연방저작권법 §1201(d) - §1201(j)에 접근통제권한에 대한 제한 내지 예외를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예외조항에 의해서는 비압호 기반 워터마킹 기술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우회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 - 소유에서 사용권리로의 이동- 2007, 170면.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이전 단계인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대하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균형원리를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 연방대법원은 접근통제와 공정이용의 원리가 상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접근통제에 대한 공정이용의 항변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DMCA가 지니고 있는 법리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sup>6)</sup>

## 2) 일본

1999년 6월 성립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는 전용장치 등을 공중에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즉 i)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는 것을 유일한 기능으로 하는 장치(당해 장치의 부품 1조로서 용이하게 조립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유일한 기능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제조·수입·소지하거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 또는 당해 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하거나 송신 가능하게 한 자, ii) 업으로서 공중의 요구에 응하여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sup> 즉 무력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화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간접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sup>8)</sup> 또한 기술적 수단을 ‘업’으로서 회피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전적으로 회피기능을 갖는 장치 등의 공중양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업으로서 하지 않는 한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는 법적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6) United States v. Elcom Ltd, 203 F.Supp. 2d 1111(N.D.Cal,2002); 321 Studios v. MGM Studios, Inc, 307 F. Supp. 2d 1085(N.D.Cal,2004).

7) 일본 저작권법 제102조의2

8) 이규홍,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2008, 159면.

한편 일본 개정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수단의 회피에 의해 가능하게 되거나 그 결과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sup> 즉 저작권법 제30조는 “저작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물(이하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이라고 한다)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사적사용”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고 한 후 제외되는 경우로서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기술적 보호수단에 사용되는 신호를 제거하거나 또는 개변(기록 또는 송신방식의 교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제거 또는 개변을 제외한다)함으로써 당해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하여 방지되어 있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하여 억제되어 있는 행위의 결과에 장애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이외의 권리제한에 대해서는, 기술보호수단의 회피에 의해 가능하게 된 복제 등이라도 권리제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이외의 권리제한들은 공익성·사회관행·다른 권리와 조정이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에 의해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sup>10)</sup>

### 3) 프랑스

2006년 8월 3일 시행된 프랑스 개정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삽입하게 된 것은 유럽지침 2001/29/CE(2001. 5. 22.)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주요부분 통합지침”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 유럽지침이 기술적 조치의 정의를 제외한 그 밖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프랑스도 기술적 조치에 관련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sup>11)</sup>

9)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2호

10) 化廳長官官房著作權課內 著作權法令研究會·通商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著作權法·不正競争防止法改正解説, 有斐閣, 1999, p. 95.

유럽지침 2001/29/CE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지적소유권법 전 L.331-5조가 제정되었는데, 동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실연·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또는 프로그램(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유효한 기술적인 조치는 현재의 편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기술적 조치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기술·장비 및 부품을 말하고,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자의 통제·비밀번호·암호술·전파방해 또는 그 밖에 보호대상의 변형 또는 복제를 통제하는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치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기술적 조치에 사용되는 기술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기술이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었을 때, 즉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기술적인 조치가 되었을 경우에만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법이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기 보다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가 누군가에 의하여 파괴되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sup>12)</sup>

한편 프랑스는 지적소유권법전 L.331-6조 및 L.311-7조에서는 L.331-5조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가 상호호환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적인 조치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기간의 호환성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기술적 조치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저작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L.331-6조 제1항에서는 기술적 조치 조정협회가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의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 이외에 기기간의 호환성에 관련된 문제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데 이용되는지에 대하여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법제처, 해외법제뉴스, 월간법제 125호, 2006년 12월호, 125면.

12) 법제처, 앞의 자료, 126-127면.

마지막으로 프랑스 지적소유권법은 기술적 조치와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사적복제와 관련하여 L.331-9조 전단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장치하는 저작권자는 동 기술적 조치로서 복제가능횟수를 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이 사적복제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L.331-8조 후단에서 기술적 조치 조정협회가 기술적 조치가 사적복사의 권리를 박탈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법적 보호가 저작권의 근본목적의 하나인 공정이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균형감 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이용의 영역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적 복제행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 보다 공정이용의 영역이 우위에 존재하는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4) 독일

2003년 9월 개정된 독일 저작권법도 유럽지침 2001/29/CE(2001. 5. 22.)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주요부분 통합지침” 제6조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의 개정 저작권법 역시 유럽지침상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으나,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에 관한 규정 가운데 7가지의 경우를 특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권리자에 대하여 저작권제한규정 수혜자들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수단의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피수단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독일 저작권법 제95a조 제1항은 동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혹은 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여타 보호대상물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러한 저작물 혹은 보호대상물에서의 접근 내지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력화되는 것임을 행위자가 알거나 상황에 비추어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력화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판매촉진·광고 혹은 시장화되는 대상물이거나, 유효한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면 단지 한정된 경제 목적이나 용도를 갖는 것이거나, 주로 유효한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를 가능 혹은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제작·조절 혹은 제공되는 것의 제작·수출·배포·매매나 대역에 관한 광

고·장치·기기나 구성부분의 영업 목적의 점유 및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그 자체와 함께 무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물의 제작·판매·대여 등의 행위까지 법적 금지의 범위에 포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저작권법 제95a조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행위를 폭넓게 금지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95b조는 저작권 제한규정의 취지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법 및 공공의 안전, 장애인, 교회·학교 또는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편집물, 교육방송, 수업 및 연구를 위한 전송, 사적 사용 및 기타 자기사용을 위한 복제, 방송사업자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인 경우 그 권리자에게 그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그러한 회피수단을 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95a조의 “기술적 조치의 보호”규정이 저작권의 실효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95b조의 “제한규정의 관철”은 공정이용과 저작권 보호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제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권리강화와 이용자의 권리제한이라고 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독일 저작권법의 입장은 별칙규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있다. 즉 독일 저작권법 제111a조에 의하면 기술조치 회피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보아 그에 대해 50,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제95a조의 기술조치 보호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 5) 비교법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내지 무력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엄격한 형사처벌에 의해 금지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라 보호의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즉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양자에 대해 모두 보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와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한해서만 보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

로 나뉘어졌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경우이며, 독일·프랑스·일본은 모두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접근통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되는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근통제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로 말미암아 사실상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사실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간의 충돌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미국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공정이용에 어떠한 방해나 조력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sup>13)</sup>를 지키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정이용의 향변이 법원에서 배척됨으로써 공정이용조항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일본은 권리통제형 기술보호조치에 한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만,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화 예비행위만을 금지하며, 기술적 수단을 업으로 회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규제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정이용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사적사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 내지 무력화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적사용을 제외한 저작권법상의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공정이용의 주요영역인 사적복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권리보다 중요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달리 독일·프랑스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법적 보호가 저작권보호의 근본목적의 하나인 공정이용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균형감 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프랑스는 기술적 조치를 장치하는 저작권자가 동 기술적 조치로서 복제가능횟수를 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이 사적복제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안되며, 기술적 조치 조정협회가 기술적 조치가 사적복제의 권리를 박탈하는지를 감시하도록 하여 공정이용을 위한 사적복제가 기술적 조치보다 우위에

13) 오길영,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2호, 2006, 231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일도 공정이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인 경우 그 권리자에게 그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그러한 회피수단을 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

각국의 저작권 상황에 따라 기술적 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으로 보호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는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 있다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 나. 우리나라의 입법경향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등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은 제124조 제2항으로 동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무력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 등과 같은 무력화 예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등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외한 복제통제기술 등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그 자체는 따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회행위로 인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록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회하는 행위는 금

지되지 않는 것이다.<sup>14)</sup> 한편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장치 등을 제조·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단서나 예외조항으로 저작권 제한 또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제한방식에 있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sup>15)</sup> 이와 같은 입법방식은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사적인 권리와 사회문화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36조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한편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행위를 하게 하는 기술 제조 및 거래 등의 금지 외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라는 문구가 없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로서 열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입력·암호화” 등이 접근과 관련된 대표적 기술로 인식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법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접근통제조치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저작권자의 접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접근한 것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의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컴퓨터프로그램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도 아닌 접근침해를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적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권리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만 동법

14) 오승중, 저작권법, 2008, 1343-1344면.

15) 조정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Law&Technology 제3권 제2호, 2007, 37면.

16) 오병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인터넷 법률 제27호, 2005, 12면.

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저작권법과 달리 공정이용을 위한 권리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동법률 제30조 제1항의 무력화행위자체의 금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도 제2항의 무력화 예비행위금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2항에는 공정이용에 의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이 무력화 예비행위금지에 대해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일관된 것으로, 이는 우리의 저작권정책에 있어서 무력화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하지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공정이용원리에 의한 권리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공정이용에 의한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저작권체계의 불합리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저작권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영역을 보장해 줌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는 한, 저작권법의 양대 근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공정이용원리에 의한 권리제한은 저작권제도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가. 저작권 제한원리로서 공정이용과의 관계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저작권자의 기술적 법적 통제는 저작권법의 균형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영역을 법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영역의 자유이용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자들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로 인

해 더 이상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공재가 아니게 되었다.<sup>17)</sup> 즉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그것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공유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그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의 DMCA와 같은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규정은 저작물의 공유영역의 이용을 차단할 뿐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시키고 저작권자에게 영속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저작권의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끝없이 발전하는 기술적 수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고, 저작권자 자신이 타인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는 더 이상 중요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sup>18)</sup>가 되어 저작권법의 존재의미마저 희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보호가 저작권법의 정치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공유영역의 자유이용에 대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흠결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로 말미암아 공정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 나. 저작권 남용금지와의 관계

저작권 남용의 금지법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의 행사가 권리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가 형식상 권리의 행사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실질적인 경우에 권리행사라고 인정할만한 범위를 일탈하고, 권리의 공공성 및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그 자체에 내재하는 목적을 벗어나서 권리의 적법성을

17) 이성우, “기술적 보호조치에 있어서 접근통제조치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6집 제2호, 2007, 228면.

18) John R. Therien, Exorcising The Specter of a “Pay-Per-Use” Society: Toward Preserving Fair Use and The Public Domain in the Digital Age, 16 Berkeley Tech. L. J. 2001, p.986. ; 김성호, “디지털 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6](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6)에서 재인용.

상실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권리의 남용<sup>19)</sup>이라 하고, 이는 저작권행사의 제한원리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법과 같이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으로 보호하게 됨으로써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의한 법적 보호라고 하는 3종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는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권리강화이며, 저작권의 내재적 목적을 일탈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가 권리의 남용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의 독점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남용이 될 수 있다. 특히 잠금장치 형태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생성시키고, 비판과 보도와 같은 공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올바른 지식의 재생산을 차단하며, 표현과 아이디어라는 이분법에 의해 명백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의 남용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sup>20)</sup>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다. 저작권법의 입법목적과의 관계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공정이용의 보장을 통한 문화발전에 그 목

19) 박윤직, 민법총론, 2003, 68면.

20) 김성호, “디지털 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6](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6)

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충실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권리보호의 흠결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정이용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의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입법을 함에 있어서 저작권제도의 목적에 따라 명확하고도 적절한 공정이용에 의한 예외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없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만 입법을 함으로써 스스로 입법목적은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작권법이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충실히 유지할 때에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도, 이용자의 공정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이용도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제언

저작권법을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중립적인 규범으로 이해한다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적 보호조치는 이미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고 하는 저작권법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일방적인 저작권자의 가치편향적 의도로 만들어진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른 법도 아닌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저작권법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자신의 정한 권리를 스스로 무시할 수도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 보장의 균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균형’을 넘어서, 권리자가 임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균형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제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다. 즉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이해해야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극복하고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적 보호의 범위안으로 포섭할 수 밖에 없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권의 보호와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만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의 규정방식과 같이 공정이용을 위한 저작권자의 의무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가 가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그 권리자에게 기술조치회피수단의 제공의무를 부과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정이용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의무규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내용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론, 박영사, 2003.
- 김성호, “디지털 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6](http://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6)
- 김현경/정필운,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의 제한”, 인터넷 법률 제44호, 2008.
- 도학선, “개정 저작권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Law&Technology 제3권 제2호, 2007.
- 법제처, 해외법제뉴스, 월간법제 125호.
- 오길영,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2호, 2006.
- 오병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인터넷 법률 제27호, 2005.
-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2008.
- 이규홍,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1권 제1호, 2008.
- 이성우, “기술적 보호조치에 있어서 접근통제조치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6집 제2호, 2007.
- 임원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3.
- 장재원, DRM 기술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한계와 규제,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논문, 200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2002.
- 조정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행위”, Law&Technology 제3권 제2호, 2007.
- 최호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0권 제4호, 2008.
-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 - 소유에서 사용권리로의 이동- 2007
- Charles Clark, “Publishers and Publishing in the Digital Era”, WIPO, Mexico Symposium Book, 1995.

Pamela Samuelson, “DRM(and, or, vs.) the Law”, 46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6, No.4, 2003,  
化廳長官官房著作權課內 著作權法令研究會·通商産業省 知的財産政策室, 著作權法·不正  
競争防止法改正解説, 有斐閣, 1999.

## A Study on the Circumvention agains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ed Works

Tak, Hee-Sung<sup>\*</sup>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 protection is thought to be very much efficient for preliminary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o be legally protected in the world: In Korea, not only Article 124-2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Article 30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has regulations of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incapacitation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However,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of digital contents should be carefully made: In other words, this is because legal protec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for copyright protection is not preliminary and auxiliary protection of copyright but additional and inherent protection. Therefore, when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not to protect rights of the Copyright Act but to control another things that the Copyright Act does not enact, they may be free from original purposes to destroy balance of interest relations between users.

If technical protection might be focused on legal protection not considering physical control system, it could give practical control rights on either the use or copyrights that are not permitted to exercise rights. Therefore, technic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shall be legally protected to elevate creation of copyrighted works and to expand use of contents and to pursu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ies and not to destroy balance of the use that shall be meaningful for protection.

---

<sup>\*</sup>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Law

❖ Keywords :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ccess control, Fair use, Public domain, copyright, copyrighted works